

-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.  
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. 1992년 2월 26일 충청

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2월 27일 회부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〈참 조〉

#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(보건과소관)

#### 검 토 보 고 서

##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2년 2월 26일
- 회부일자 : 1992년 2월 27일

##### 3. 제안사유

- 가.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체  
제정되었고, 의료기사법 중 안경업소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, 군  
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였던 위임조례의 항목을 삭제하고
- 나. 안마사 자격인정과 자격증교부 권한의 이원화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  
어 위임 조례를 삭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조치.

#### 4. 주요골자

- 가.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폐지로 관련 사무의 위임조례 삭제
- 나.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안경업소 관련업무가 시장, 군수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조례 삭제
- 다. 안마사자격증 교부 권한위임 근거규정불명으로 동업무를 도지사 업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위임조례 삭제
- 라. 위임사항 16건(별첨)이 삭제되어 86건에서 70건으로 줄었음.

##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가.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체  
제정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보건과 분야 일련번호 32번부터  
40번까지 9건의 권한이 도지사에 위임되어 삭제되고, 의료기사법 제13  
조의 4(안경업소의 개설등록)항이 도지사에서 시장, 군수로 개정됨에 따  
라 조례로 위임하였던 일련번호 69번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 
대체 계정 및 개정에 따른 것임.
- 나. 안마사 자격인정은 도지사 권한이나 자격증 교부는 시장, 군수에 위임  
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, 위임 조례 일련번호 68번을 삭제하여 도  
지사 권한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